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12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 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 조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 2013년 서울시 표준형 보건지소 확충계획

2013. 1

복 지 건 강 실  
(보건의료정책과)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 ( )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 ( ) 무 □
	● 전 문 가 : 유 ■ ( ) 무 □
	● 음 브 즈 만 : 유 □ ( ) 무 □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 종 앙 부 처 : 유 □ ( ) 무 □
타 자 원 의 활 용	● 민 간 단 체 : 유 □ ( ) 무 □
	● 기 업 : 유 □ ( ) 무 □
	● 관 계 기 관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민 간 단 체 : 유 ■ ( ) 무 □
	● 시 산 하 기 관 : 유 ■ ( ) 무 □

# 2013년 서울시 표준형 보건지소 확충계획

서울특별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및 시민의 접근성 강화

## I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지소 설치) 및 제19조(비용의 보조)
- 제35대 시장공약사항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도시보건시설” 확충

## II 추진현황

### ■ 시설확충 현황

- 설치지원 : 총 10개소(국비형 5개소, 서울형 5개소) 지원, 4개소 운영 중
- 2012년 6개소 확충 : 국비형 1개소, 서울형 5개소

자치구 지역 (개소일자)	형태 (지원연도)	복합시설 여부(사용층수)		지소 면적	예산지원(단위:천원)				
		타 입주시설			지원내용	계	보건지소 확충		구비 등
							국비	시비	
노원구 월계 (‘05.11.22)	국비형 (‘08)	복합(1~3층)		1,025.4㎡ (약310평)	신축	5,600,000	723,300	180,850	4,695,850
송파구 거여 (‘10.05.28)	국비형 (‘09)	복합(1,4,5층)		1,429㎡ (약432평)	개보수	1,671,500	490,839	122,709	1,057,952
성북구 동선 (‘11.09.01)	국비형 (‘11)	단독(지하1, 1~3층)		906㎡ (약274평)	개보수	869,127	292,295	73,074	503,758
광진구 중곡 (‘12.03.20)	국비형 (‘09)	복합(1,2,5층)		841.3㎡ (약254평)	신축	8,860,276	565,821	141,455	8,153,000
은평구 구산 (‘14.2월예정)	국비형 (‘12)	단독(지하1, 1~4층)		1,252㎡ (약378평)	신축	4,434,000	891,000	222,750	3,320,250

자치구 지역 (개소일자)	형태 (지원연도)	복합시설 여부(사용층수)		지소 면적	예산지원(단위:천원)				
		타 입주시설			지원내용	계	보건지소 확충		구비 등
							국비	시비	
도봉구 창동 (‘13.11월예정)	서울형 (‘12)	복합(1~2층, 4층)		568㎡ (약171평)	증축	1,620,000	-	1,500,000	120,000
		동 주민센터							
서대문구 가좌 (‘13.4월예정)	서울형 (‘12)	복합(3~4층)		753.7㎡ (약227평)	신축	2,539,000	-	1,500,000	1,039,000
		동 주민센터							
서초구 방배 (‘13.9월예정)	서울형 (‘12)	복합(2층)		920㎡ (약278평)	신축	3,367,400	-	1,500,000	1,867,400
		동 주민센터							
은평구 응암 (‘14.6월예정)	서울형	복합(지하1, 1~3층)		594㎡ (약180평)	신축	2,622,389	-	1,500,000	1,122,389
		청소년 독서실							
양천구 목동 (‘14.4월예정)	서울형	단독(2월 부지확보 예정)		588㎡ (약178평)	신축	3,302,000	-	1,500,000	1,802,000
		-							

## ■ 운영현황

### 1. 보건지소 사업별 인력현황(‘12.12.31기준)

구 별	인력 총계	핵심사업						선택사업		행정 지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대사포함	재활보건 사업	방문건강 관리사업	지역연계 사업	인력 소계	사업내용	인력수	
노원구	26(8)	5(2)	4(4)	1	5(2)	1	16(8)	구강보건사업	1	6
								예방접종사업	1	
								한방보건사업	2	
송파구	40(20)	4	5(3)	4	17(16)	-	30(19)	구강보건사업	1(1)	7
								다문화가정 건강관리	1	
성북구	24(3)	-	8	4	5(3)	1	18(3)	건강진단실 운영	3	3
광진구	19(8)	3	4(2)	2(1)	4(4)	-	13(7)	구강보건사업	1	4
								영양플러스사업	1(1)	

※ ( ) 비정규인력

### 2. 직종별 인력구성(‘12.12.31기준)

구별	인력 구성	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 사	간호 사	물 리 치료사	작 업 치료사	영양 사	운동 사	임상 병리사	방사 선사	치과 위생사	보건 행정	기타
노원	정규	18	1		1	7	1						1	5	2
	비정규	8				5			1	1	1				
	계	26	1		1	12	1		1	1	1		1	5	2
송파	정규	20	2			7	2	1	1		1		1	4	1

구별	인력 구성	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영양사	운동사	임상 병리사	방사선사	치과 위생사	보건 행정	기타
	비정규	20				13	2		2	2			1		
	계	40	2			20	4	1	3	2	1		2	4	1
성북	정규	21	2			6	2		1	1	2	1			6
	비정규	3				3									
	계	24	2			9	2		1	1	2	1			6
광진	정규	11	1			2	1		1	1			1	2	2
	비정규	8				6		1	1						
	계	19	1			8	1	1	2	1			1	2	2

※ 정규 : 공무원(전임, 비전임계약직 포함)+상용직+무기계약  
 ※ 비정규 :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 3. 2012년 추진실적(연인원)

구별	만성질환 관리	건강생활 (대사포함)	재활 보건	방문 건강	1차진료	구강 (진료포함)	한방 (진료포함)	예방접종	그외	1일평균 내소인원
노원구	11,867	9,821	5,955	4,547	9,957	7,691	6,186	1,779	2,700	240
송파구	10,287	18,271	22,268	17,994	-	4,887	-	-	1,940	300
성북구		7,184	5,838	9,630					41,781	256
광진구	4,851	9,210	4,538	2,093		4,573				100

※ 1일평균 내소인원 : 사업실적 합계/2012년 근무일수 252일

### 4. 2013년 보건지소 예산

(단위:천원)

구별	계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총계	국비	시비	구비	국비	시비	구비	국비	시비	구비
노원구	528,732	-	-	528,732	-	-	386,988	-	-	141,744
송파구	643,266	83,914	61,162	498,190	64,785	55,426	399,467	19,129	5,736	98,723
성북구	178,013	38,385	11,516	128,112	3,290	987	103,545	35,095	10,529	24,567
광진구	523,792	100,340	85,331	338,121	89,290	82,016	295,877	11,050	3,315	42,244

※ 사업비, 운영비 : 보건지소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만 산정  
 ※ 국시비예산 : 영양플러스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 인건비 : 비정규직 인건비만 작성. 정규직 인건비는 보건소 총괄 편성

### Ⅲ 추진방향

- 자치구별 인구 5~7만명 범위 취약지역 선정하여 지역중심의 보건사업 추진
- 필수 핵심사업과 취약지역의 건강수준과 현황에 맞춘 선택사업 수행
- 건강실천, 예방 및 관리, 재활 등 대상자 중심의 포괄 건강서비스 제공
- 시민, 지역사회 참여 및 연계협력 전략을 통한 사업운영 활성화
- 사업실적, 사업운영 평가 등 사업수행 전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

### Ⅳ 추진계획

#### 1 추진목표

- 2013년 표준형 보건지소 7개소 신규 확충
- 2014년까지 표준형 보건지소 25개소 확충

연도별 확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규확충	4	6	7	8
누 계	4	10	17	25

#### 2 추진방법

- 자치구 보건소 대상 사업공모 통해 선정된 자치구 보건지소 설치비 지원
- 사업운영 지원
  - 사업운영 기술지원, 모니터링 : 실적관리, 사업효과 분석 등
  - 운영비 지원 : 최대 1억원 내 자치구별 예산배분 기준 마련

### 3 사업대상

-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
  - 보건지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여건을 갖춘 자치구
  - 기존 보건지소 운영 자치구도 사업신청 가능

### 4 사업내용

#### ■ 선정원칙

- 자치구별 시민의 건강문제, 자원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사업선정
- 핵심사업 2가지 필수 수행, 선택사업 2가지 이상 선택
- 사업 대상자의 등록, 예방, 관리, 재활 등 포괄적 서비스 가능한 인프라 확충
- 사업별 지역사회 연계를 기본전략으로 포함, 협의체 상설 운영

#### ■ 사업선정

##### 1. 핵심사업

- 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 심뇌혈관질환관리, 대사증후군관리 등
- ② 재활보건사업 : 재활치료,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 2. 선택사업

- 방문건강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 “단순진료”는 지양하되 자치구 특성에 맞게 탄력적 운영

#### ■ 지역사회 참여

- 보건지소 운영 전반 또는 사업별 시민, 의료기관, 유관기관 등 참여 협의체 설치
- 지역내 의료기관, 유관기관 의뢰 및 연계활동 추진
- 시민, 지역사회 단체 등 참여, 협력 프로그램 운영
- 연간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

## 5 지원기준

### ■ 지역선정

- 구별 보건의료 취약 洞을 중심으로 인구 5~7만 범위의 지역
- '12년 서울시 건강격차해소를 위한 보건정책방안 수립 연구에서 제시한 자치구별 건강취약 지역을 우선 선정

### ■ 지원금액

- 시설, 보건의료장비, 차량 포함 시비 15억원 내
- 자치구 매칭펀드 없으나 별도 구비예산 확보하여야 함

### ■ 예산배분

- 균등배분(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 없음)

### ■ 시설기준

- 지원조건 : 주민의 생활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시설
- 면적기준 : 330㎡ 이상(핵심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면적 확보)
- 지원내용 : 신증축, 개보수, 매입, 분양  
(사업승인 면적 내 건물에 한해 지원, 토지매입비 제외)
- 지원단가 : 15억원 내(의료장비, 차량 구매 없을시 최대 15억)에서 면적당 기준 적용
  - 신증축 : 2,749천원/㎡
  - 개보수 : 1,731천원/㎡

#### 단 가 산 출

- 신증축 : '11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기준 m당  
(공공업무사무소 2,299천원+병원 2,792천원)/2×1.08(물가상승률4%×2년)=2,749천원
- 개보수 : '10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기준('11년 기준 없음) m당  
(공공업무사무소 1,345천원+병원 1,746천원)/2×1.12(물가상승률4%×3년)=1,731천원

- 건물 매입, 분양 : 최대 지원액 한도 내

※ 지원금액 기준 이상 소요되는 비용은 구비 부담

소요비용이 최대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 소요비용으로 지원



## ■ 보건의료장비 및 차량

- 총 지원액 중 의료장비 1억원, 차량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 인력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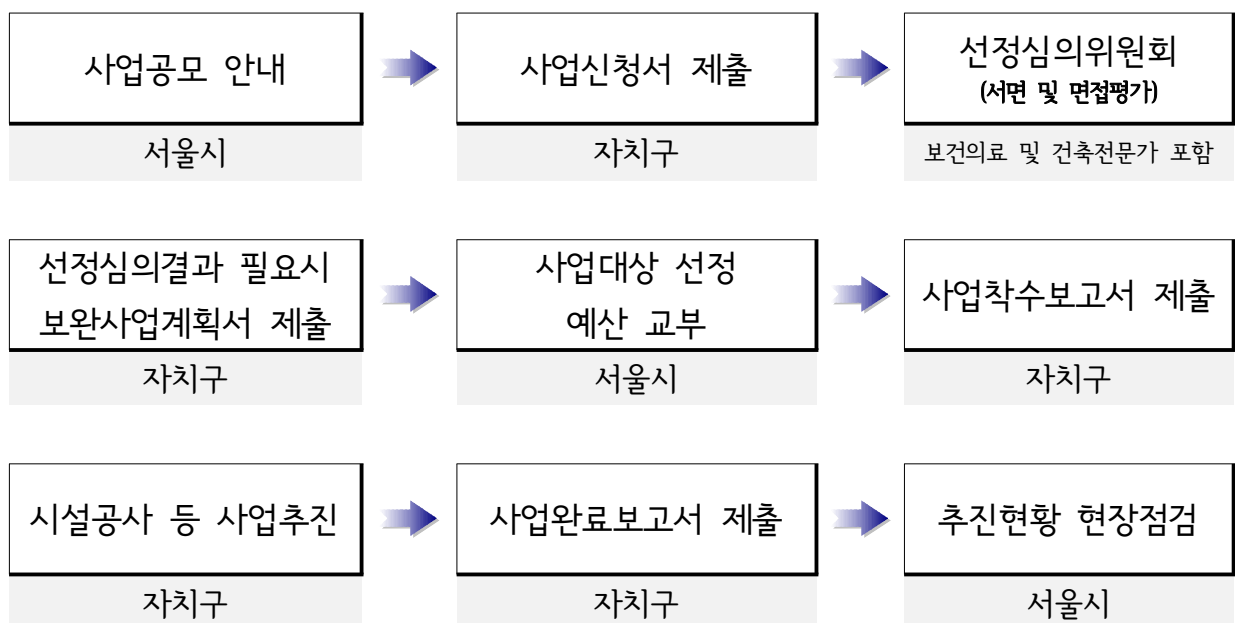
- **필수정원**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배치기준 준수
  - 보건지소장 1인(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 임용)
  - 간호사 3인
- **사업인력** : 사업별 인력 배정기준 없음, 자치구별 인력확보 방안 마련

## ■ 보건지소 법적기반 마련

- 보건지소 설치조례 제정 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등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건지소 설치 명시

※ 첨부 “표준형 보건지소 확충 세부기준” 참조

## 6 추진절차



## VI 소요예산

### ■ 예산액

- 도시보건지소확충지원(자체) 1,500,000천원×7개소=10,500,000천원

###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보건지소 확충 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 VII 추진일정

- '13. 2월 : 표준형 보건지소 공모
- '13. 3월 : 자치구 사업신청서 제출 및 선정심의
- '13. 4월 : 사업대상 선정 및 예산교부
- '13. 6월 : 보건지소 운영 기술지원 체계 마련
- '13. 12월 : 보건지소 설치운영 모니터링

## VIII 기대효과

-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강화, 시민참여 확대로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실현
- 예방중심의 질병관리,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첨부 : 2013년 표준형 보건지소 확충 세부기준 1부. 끝.

# 2013 서울특별시 표준형 보건지소 확충 세부기준

## 지원기준 주요 변경사항

구분	'12년도	'13년도
지역선정	보건분소 외 신규지역 설치	자치구별 취약 동지역 설치
지원단가	- 신증축 : 2,606천원/㎡ - 개보수 : 1,746천원/㎡ (‘10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기준)	- 신증축 : 2,749천원/㎡ - 개보수 : 1,731천원/㎡ (‘11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기준 적용)
시설비 제외항목	-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대지매입비 - 담장, 옹벽(부대시설), 별도의 옥외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포장, 건축공사에 필요한 부분 외의 절/성토 - 기존 시설의 철거 및 폐자재처리, PILE 지정, 동결심도를 초과하는 깊이의 기초공사 비용 - 가구, CI, 냉방설비 등의 건축공사 외에 추가되는 부분의 사업비 (각 실별 필요한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가구 등은 구비로 부담하여야 함) - 건물매입·분양비 중 토지부분금액 (감정평가에 의해 측정) - 매입·분양 완료 후 입주 시 개보수 비용	- 대지매입비 - 가구, CI, 냉방설비 등의 건축공사 외에 추가 되는 부분의 사업비 (각 실별 필요한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가구 등은 구비로 부담하여야 함) - 건물매입·분양비 중 토지부분금액 (감정평가에 의해 측정)
보건의료 장비	- 보건의료장비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장비의 활용계획이 명확 하지 않은 신청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지원 - 소모품이나 100만원 미만의 보건의료 장비, 사무용가구, 전산장비 (노트북, 프린터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동일 - 단 빔 프로젝터용 노트북, 복합기 각 1대 구매 가능 ※ 보건지소 설치 확인, 활용정도 파악 예정
보건사업용 차량	- 보건사업차량 : 조달청에 선정되어 등록되어 있는 보건사업용 차량 2대 이내 구매 - 장애인차량 : 기관당 1대 신청 가능,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 고정장치 등 특정사양을 구비한 차량	- 보건사업차량, 장애인차량 지원한도(5천만원) 내에서 2대 이내 구매 가능

※ 2012년도 지원 자치구 소급 적용, 단 지원단가 제외

※ 2012년 신청자치구의 수요, 의견 반영하여 지원기준 완화

## 1. 사업운영 방향

### ○ 서울특별시 건강취약지역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

- 지역간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자치구 내 인구 5~7만명 범위 건강취약지역 선정
- 지역 건강현황, 수요를 고려한 필수 핵심사업과 선택사업 수행

- 필수사업(2가지 필수)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 선택사업(2가지 이상) : 자치구 특성에 따라 탄력적 사업선택  
※ 일반진료 서비스 지양

- 보건소와 보건지소간 역할 분담을 통한 보건사업의 체계화, 운영 효율화
- 사업 수행에 맞는 시설, 장비, 인력확보에 대한 자치구의 노력 도출

### ○ 대상자 중심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발견, 등록, 예방, 관리 등 개인 건강수준에 따른 통합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건강수준별 다양한 서비스 접근
- 시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중점 제공
-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 등 민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서비스 제공

###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 체계 구축

- 사업운영 관련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운영
- 지역 내 의료기관, 유관단체, 학교, 시민모임 등 자원 발굴, 적극적 사업참여 동반자로 육성

## 2. 신청대상

### ○ 2013년 서울특별시 표준형 보건지소 확충목표 : 7개소

### ○ 표준형 보건지소 신청가능 지역 : 25개 자치구 모두 신청 가능

### ○ 지역선정

- 구별 보건의료 취약을 중심으로 인구 5~7만 범위의 지역
- “2012년 서울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정책방안 수립 연구”에서 제시한 자치구별 건강취약지역(건강사업 집중지역) 우선 선정

## 3.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도시보건지소 1개소 당 시비 15억원 내(시설, 장비 및 차량 포함)
  - 예산지원액 15억원 한도내에서 시설, 보건의료장비, 차량 유동적 사용 가능하나 보건의료장비 1억원, 차량 5천만원 한도 초과할 수 없음
- 자치구 매칭펀드 없으나 별도 구비예산 확보하여야 함.

○ 예산배분

- 균등배분(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 없음)

○ 시설기준

- 면적기준 : 330㎡(100평)이상(핵심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면적 확보)

- 지원내용 : 신증축, 개보수, 매입, 분양

(사업승인 면적 내 건물에 한해 지원, 토지매입비 제외)

- 지원단가

- ▶ 신증축 2,749천원/㎡

- 산출 : '11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기준 ㎡당

(공공업무사무소 2,299천원+병원 2,792천원)/2×1.08(물가상승률4%×2년)=2,749천원

- ▶ 개보수 1,731천원/㎡

- 산출 : '10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기준('11년 기준 없음) ㎡당

(공공업무사무소 1,345천원+병원 1,746천원)/2×1.12(물가상승률4%×3년)=1,731천원

- ▶ 건물 매입·분양 : 최대 지원액 한도내

※ 지원금액 기준 이상 소요되는 비용은 구비 부담

소요비용이 최대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 소요비용으로 지원

○ 보건의료장비 및 차량

- 총 지원액 중 의료장비 1억 원, 차량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보건의료장비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장비의 활용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신청은 지원 금액을 조정함

- 보건사업차량 또는 장애인차량 총 2대 이내 신청 가능

○ 인력기준

- 필수정원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배치기준 준수

- 보건지소장 1인(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 임용)

- 간호사 3인

- 사업인력 : 사업별 인력 배정기준 없음. 자치구별 인력확보 방안 마련

○ 보건지소 설치 법적근거 마련

- 보건(지)소 설치조례 제정 또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하여야 함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건지소 설치 명시

## 4. 지원항목별 고려사항

### ※ 시설 고려사항

- 시설설치시 건축법, 소방법 등 제반규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운영을 위한 면적이 충분해야 함.
-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함.
- 시설의 위치가 주민의 생활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해야 함
- 시설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도시보건지소의 기능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
- 자치구는 공사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여야 함

### 가. 신축

- 대지면적은 보건지소 시설과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어야 하며, 그 위치가 주민의 생활 및 교통 중심지로 향후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는 경우
  - ※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신청 가능하고, 보건지소는 가능한 한 1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에게 접근성이 좋고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함

### 나. 증축

- 대지 : 면적이 충분하고, 주민의 생활중심지에 위치
- 건물 : 건물조건은 개보수의 경우와 같으며, 사업 확장을 위해 공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원

### 다. 개·보수

- 대지 : 면적이 충분하고 주민의 생활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경우
- 건물 : 기존 연면적 이상이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건물의 기능보강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기능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

### 라. 매입·분양

- 정의
  - “매입”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는 것
  -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
-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건축된 지 10년 이하의 건물이어야 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 등)이 갖추어진 건물 이어야 함
- 건물매입·분양시 입주되어 있는 상가의 종류를 고려하여 매입하여야 함
  - ※ 건물임대 불가

## 마. 시설비 시비지원 제외항목

- 지원액은 사업승인 면적의 건축공사비 및 건물매입·분양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반드시 구비를 확보하여야 함
  - 시비지원액을 초과한 필수 건축공사비, 건물매입·분양비
  - 대지매입비
  - 가구, CI, 냉방설비 등의 건축공사 외에 추가되는 부분의 사업비  
(각 실별 필요한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가구 등은 구비로 부담하여야 함)
  - 건물매입·분양비 중 토지부분금액(감정평가에 의해 측정)

## 바. 보건의료장비

- 보건의료장비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장비의 활용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신청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지원
  - 소모품이나 100만원 미만의 보건의료장비, 사무용가구, 전산장비(노트북, 프린터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빔 프로젝터용 노트북, 복합기 각 1대 구매 가능
- ※ 추후 보건지소 설치 확인, 활용정도 파악 예정

## 사. 보건사업용 차량

- 보건사업차량 또는 장애인차량 신청 가능하며 지원한도 내에서 조정
    - 보건사업차량 : 보건지소 사업 수행을 위한 차량
    - 장애인차량 :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 고정장치 등 특정사양을 구비한 차량
- ※ 차량 정수 자치구별 확보

# 5. 사업내용

## 가. 사업 대상자

- 관할지역 주민
- 필수 사업대상 :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

## 나. 필수사업

- 1)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 대사증후군관리 및 심뇌혈관예방관리 통합 수행

-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자 대상자 발굴 및 조기발견
  -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기관, 단체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 건강상태 측정
- 만성질환 위험요인 보유자 등록, 관리(Case Management)
  - 건강군, 건강위험군, 질환군 등 건강수준에 따라 등록 및 건강관리
  - 등록 만성질환자 지속치료 유지관리 차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 자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1:1 개별 상담, 그룹교육, 교실운영 등)
  -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한 만성질환자 지속 관리 실시
- 만성질환관리, 건강생활실천 시민 건강교육·홍보사업
  - 노인회 등 지역사회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 표준화된 교육, 홍보자료 활용

## 2) 재활보건의사업

- 중점관리 대상 : 장애인, 근골격계, 뇌졸중, 퇴행성관절염 등의 재활 및 물리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1) 재활서비스 제공 및 관리 : 재활치료, 재활운동, 물리치료
  - (2) 지역사회 재활치료 운동봉사자 교육
  - (3) 지역 내 유관기관 의뢰 및 연계활동 : 재활관련 자문의 위촉, 의료기관, 유관단체 연계 협조
  - (4)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활동, 교육 및 홍보

## 다. 선택사업

- 보건지소 선택사업의 선정
  - 자치구의 역량, 관심 등 여건에 따라 수행 가능한 사업과 관련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
  - 지역의 요구도, 현황을 반영한 사업 선택

## 라. 지역사회 참여 전략

- 보건지소 사업수행시 협의체 운영을 기본전략으로 제시
  - 주민, 의료기관, 유관단체, 학계 등 참여
-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연계, 시민참여 방안 마련
  - 지역건강리더 및 모임 육성, 지역모임 공간제공, 건강실천단 운영, 지역내 노인회, 부녀회, 동호회 등과 협력체계 구축, 지역내 의료기관, 유관단체, 학교 등과 연계한 사업운영
- 연간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